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홍성룡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5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1일
발 의 자 : 홍성룡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기대, 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 김희걸, 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 송정빈, 양민규, 오현정, 이광호, 이병도, 이영실, 장상기, 최 선, 최웅식, 황규복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의3에서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됨. 이에 학교의 장이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의규정을 둬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의5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보건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5(공기정화설비 등 설치)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5(공기정화설비 등 설치)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.